무배당 셀프디자인(self-design)연금보험 보험료증액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2조【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한도】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증액보험료라 합니다. 이 증액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이 증액보험료의 변경은 직전 증액보험료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증액보험료를 감액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2.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3.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계약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5. 기타 계약자의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는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의 30% 범위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증액할 수 있는 보험료의 최고한도는 주계약 보험료의 600%범위내로 합니다. 제2항의 경우 증액보험료의 감액은 동일 보험년도중 1회에 한하며 이 특약에 의한 증액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4조【특약보험료의 처리】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납입순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하여 드리며, 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때까지 부리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납입순보험료의 부리적립시 적용하는 이율은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1.5%』로 합니다.

제5조【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지급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
2. 연금지급 개시후에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주계약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

②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생존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주계약의 생존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4관. 분쟁조정 등

제7조【특약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